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 - 41호

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9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.)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07호(2009.03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19호(2014.03.2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9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 계획인가 처리하고,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고시합니다.

2021년 4월 7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명칭 및 종류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9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240-1번지일대 / 4,061.7㎡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성 명 : 더센티시티제이차주식회사 대표 박래영
 -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, 216호
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72개월
5. 사업시행인가일 : 2021. 4. 2.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: 별첨
7.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

대지면적 (㎡)	층 수 (지하/지상)	연 면 적 (㎡)	건 폐 율 (%)	용 적 륜 (%)	높 이 (m)	용 도
3,061.5	지하9층 지상26층	46,323.59	66.32	911.36	89.48	공동주택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

8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: 공동주택 432세대
9.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

구 분	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		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			
	종 류	규 모(㎡)	종 류	규 모(㎡)	시 행 자	부담자 및 부담내용
정비 기반시설	도로	607.9	도로	536.7	더센티시티제이차 주식회사	시행자 부담설치 후 무상귀속
			녹지	463.5		
합 계	-	607.9	-	1,000.2	-	-

10. 관계도서 :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02-3396-5754)에 비치